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독립기념관 분원 설립 근거 마련 〉

■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7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독립기념관 분원 설립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21인
2. 제안일 : 2025. 12. 2.
3. 회부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독립기념관 분원 설립 근거 마련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독립기념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3(분원) ①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 분원(이하 “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¹⁾²⁾

- 그런데,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있음에도,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외에는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이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필요한 지역에 독립기념관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분원 건립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공훈을 선양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존·계승하며, 독립정신의 함양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³⁾
- 다만, 독립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연구·전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념관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이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 이외에도 ①국가가

1) 「독립기념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복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독립기념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참고 1] (p.9) 참조.

3)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기념관을 건립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 ②지방자치단체가 기념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 기본법」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창달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훈선양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데,⁴⁾ 이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된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관은 84개임.

[표 1] 현충시설 중 기념관 현황

(2026. 1. 31. 기준 / 단위: 개)

구 분	계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교육청 소유	민간소유	공공기관
		소계	직접관리	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직접관리	산하기관	민간위탁			
계	115	14	6	3	5	84	46	8	30	5	11	1
독립운동	84	4	1	0	3	66	36	7	23	2	11	1
국가수호	31	10	5	3	2	18	10	1	7	3	0	0

자료: 국가보훈부

- 4)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이 중 ①국가가 소유·관리(직접 관리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념관은 4개, ②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념관은 66개로, 특정 지역에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은 별도의 법률 제·개정 없이 ①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한 현충시설 건립 사업 추진 또는 ②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자체 건립 등의 방안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국가 소유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현황

기념관 명	소재지	소유	관리감독	운영방식	건립비용 (지원방식)
백범김구 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	국가보훈부	사업회 위탁	167억원 (국비 160억, 성금 7억원)
안중근의사 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	국가보훈부	사업회 위탁	180억원 (국비 146억원, 성금 34억원)
매현윤봉길의사 기념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	국가보훈부	사업회 위탁	15억원 (전액 성금)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직접운영)	470억원 (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지방자치단체 소유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현황 (일부 발췌)

기념관 명	소재지	소유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밀양독립운동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양산시립독립기념관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 기념관 명에 “독립”이 포함된 기념관만 적시함. 그 밖에 광복, 3·1운동, 항일, 국채보상운동 등 ‘독립’과 관련된 기념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⁵⁾

자료: 국가보훈부

5)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현충시설 중 기념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p.11) 참조.

□ 그 밖에, 현재 독립기념관이 소재한 지역 외 타 지역에 독립과 관련된 독립 기념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이 가지는 역사적·상징적 의미, 독립기념관의 위치가 현 입지에 선정된 배경 등을 고려할 때,⁶⁾ 기념관 추가 건립 결정에 앞서 기념관 건립 필요성 및 정당성, 명칭, 추진 절차, 부지 선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에 관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⁷⁾이 있음을 개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 관련하여,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분원에 관한 사항을 독립기념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별 법인으로서 독립기념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과 함께 정관 변경 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 앞서 살펴본 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두거나, 분원 선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6)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1982년)를 계기로 발생한 반일감정과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건립비용(945억) 중 상당 부분이 국민 성금(698억원)으로 충당되었으며,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독립기념관 건립 당시 추진위원회는 독립기념관 건립 지역을 ① 독립기념관 건립에 손색이 없는 지역적 역사성이 있는 곳, ② 전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 등의 선정기준을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현재 독립기념관은 독립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전시 등에 있어 국가적 상징성을 지님(‘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 : 독립기념관 30년사(1987-2017)’, 독립기념관, 2017. 및 ‘독립기념관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83호)에 대한 국가보훈부 의견 등 참조).

7) 제22대국회 202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4년 10월 22일) 참조.

8)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 80년을 가장 잘 상징할 것 같은 사업으로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념관 건립 및 상징물 제작’은 4.6%의 응답률을 보임.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분원 설립비용(신축 공사비) 863억 400만원, 신축 이후 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연간 77억 3,700만원(5년간 386억 8,5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와 관련하여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수장고 리모델링, 보유 자료 디지털화 작업 등 독립기념관 내 다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 자원과의 관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신축 공사비	1,248	1,872	27,727	27,728	27,729	86,304
구분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인건비	2,200	2,279	2,359	2,438	2,518	11,794
경상비·사업비	4,971	5,150	5,332	5,509	5,690	26,652
자산취득비	239	-	-	-	-	239
소계	7,410	7,429	7,691	7,947	8,208	38,685

* 신축 공사비는 독립기념관 면적의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따른 공사비 단가를 적용함.

** 인건비·경상비 등은 현 독립기념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분원 설치 시 사전 협의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분관 설치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상을 종합하면,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독립운동가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측면과 함께 기념관 건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 가능성,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을 위한 고려요소 등에 관한 논의, 한정된 재원의 배분 측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독립운동 역사와 가치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1

독립기념관 일반현황

□ 건립배경

-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여 국민정서를 통합, 자주 독립 역사의 보존·계승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국민성금으로 건립 추진

- '83. 8. 15. 기공, '87. 8. 15. 준공 및 개관

□ 주요업무

-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조사·연구
- 민족정신 선양과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 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조직구성 : 10부 [사무처(7부), 감사부, 연구소(2부)] / 정원 141명

- 사무처 :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고객소통부, 안전환경부, 전시부, 교육부, 교류협력부
- 연구소 : 학술연구부, 자료부

□ 관람인원 현황

(단위 : 천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 원	1,139	1,370	1,602	1,627	1,799

* 개관('87.8.15) 이후 총 관람인원 : 62,449천 명('25.12.31. 기준)

□ 소장자료

(단위 : 점)

전적류	문서류	문화예술 종교류	생활류	군장류	산업 생업류	과학 기술류	동영상류	사진 필름류	계
22,860	46,284	1,154	2,591	675	2,044	4,863	924	27,198	108,593

※ 중요자료 171점(중복 5점 합계 제외) : 보물(8)*, 국가등록문화유산(10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5), 국가지정기록물(53), 충남 유형문화유산(1)

* 보물 : 안중근 의사 유묵, 이광악 선무공신교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5점), 김구(金九) 서명문 태극기

□ 전시관 구성

전시관별	면적(㎡)	전시주제	전시자료 (점)
제1전시관 (겨레의뿌리)	3,485 (1,056평)	○ 선사시대~조선후기 시대 ○ 불굴의 의지와 대외항쟁	245
제2전시관 (겨레의시련)	2,619 (794평)	○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	206
제3전시관 (겨레의합성)	1,478 (448평)	○ 3.1운동 ○ 3.1운동 이후 국내 대중투쟁	118
제4전시관 (평화누리)	1,494 (453평)	○ 자유·정의·평화를 지향한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 (감성관)	—
제5전시관 (나라되찾기)	2,539 (769평)	○ 독립전쟁 ○ 한국광복군 ○ 의열투쟁 ○ 해외무장투쟁	184
제6전시관 (새로운나라)	2,539 (769평)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광복 후 대한민국	158
제7전시관 (특별기획 전시실)	3,561 (1,079평)	○ 특별기획전시 ○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관 (겨레의 집 내)	1,719 (521평)	○ 국가상징물 체험(영·유아존) ○ 독립운동사 체험(청소년, 일반)	—
홍보관 (겨레의 집 내)	657 (199평)	○ 독립기념관 발자취 등	—
MR독립영상관	1,054 (319평)	○ 4DX 돌기의 비행 등 9편 ○ 독립전쟁 주제(MR, VR) ○ 한글공원 한글퀴즈(VR)	—
소 계	21,145 (6,408평)		911

※ 옥외전시 : 상징조형물(겨레의 집, 겨레의 탑, 불굴의 한국인상 등), 애국시·어록비,
통일염원의 동산, 조선총독부 철거부자재 전시 공원 등

참고 2

현충시설 중 기념관 목록

구분	기념관 명	소재지	소유
국가 소유 (14개)	전쟁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백범김구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부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부
	백마고지전적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국방부
	유엔평화기념관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경상북도 울릉군	국가보훈부
	호남호국기념관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부
	해병3.4기 호국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방부
	공군박물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군사관학교
	보보의 집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부
	육사기념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지방 자치 단체 소유 (84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산안창호기념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산김창숙선생기념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윤동주 문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함석헌 기념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근현대사기념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회영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최용신기념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유엔군초전기념관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강화 3·1운동 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지평의병·지평리전투 기념관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조소앙 선생 기념관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안성3.1운동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구분	기념관 명	소재지	소유
지방 자치 단체 소유 (84개)	의암류인석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서남궁역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재구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대포만세운동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백산기념관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기념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외솔기념관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청
	밀양독립운동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대암 이태준 기념관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애국지사산돌 손양원목사기념관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김좌진장군기념관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의사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필경사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유관순열사 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이동녕선생생가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의암기념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단재영당(기념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의병전시관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낙동강승전기념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다부동전적기념관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지구전적기념관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왕산허위선생기념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심산기념관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이육사문학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박열의사기념관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운강이강년기념관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포항시
	대전리 3.1의거기념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구분	기념관 명	소재지	소유
지방 자치 단체 소유 (84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소안항일운동기념관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광주백범기념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고하송진우선생기념관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오방 최흥종 기념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홍암나철기념관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일강김철선생기념관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영암군
	정인승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가람문학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백정기의사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제주항일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한훈기념관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박춘실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박진전쟁기념관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양산시립독립기념관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강원광복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및 메모리얼 파크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장흥군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청남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교육청 (5개)	학도병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승복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김재옥교사기념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교육청
	운문면3.18 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간소 유 (11개)	만해기념관	경기도 광주시	전보삼
	한용운선생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
	수당이남규선생 고택 및 기념관	충청남도 예산군	이문원
	항일독립운동역사관	충청북도 충주시	광복회
	덕신학교 기념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하동정씨유수공청주파종회
	서재필기념공원	전라남도 보성군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 주재년 열사 기념관	전라남도 여수시	신안주씨 돌산종친회 홍범문중
	백당기념관	전라남도 곡성군	(사)국조단국곡성송모회
	일광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일광사해의사 기념사업회
	남강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산학원
	애국지사 임병직박사 기념관	충청남도 부여군	애국지사임병직박사 선양위원회
공공 기관 소유 (1개)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

자료: 국가보훈부